

『2013년도 유휴·저활용장비이전지원사업 모집 공고』

유휴·저활용 상태의 연구장비 이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 및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13년 7월 19일
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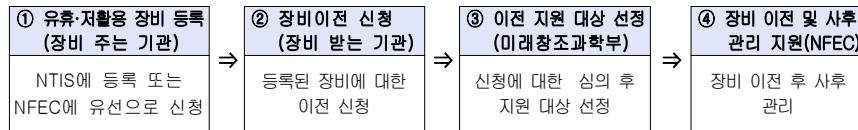
- 유휴·저활용장비의 처분이 필요한 기관과 연구시설장비의 수요가 있는 기관을 연결하여 장비이전을 지원함으로써 연구시설장비 활용도 제고 및 R&D 사업 효율화

□ 지원내용

- 지원규모 : 장비 당 취득가의 10% 이내(최대 4천만 원)
- 지원항목
 - (장비이전비) 유휴·저활용장비의 이전·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지원
 - (장비수리비) 유휴·저활용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 지원
 - (장비교육비) 장비운영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·훈련비 지원

※ 필요 수요 및 내용에 따라 장비수리비 및 장비교육비는 선택 사항

□ 추진절차



※ 유휴·저활용 장비의 정의

구 분	설 명
유휴장비	- 정상가동은 가능하나 활용도 저하 등의 사유로 가동 중지되어 향후 활용 가능성이 분명하지 않은 장비 - 6개월 이상 가동이 중지된 장비
저활용장비	- 정상가동은 가능하나 활용도가 낮은 장비 - 1년 동안 장비가동률(장비활용시간 기준) 10% 미만인 장비

2. 신청자격

□ 신청자격

- 장비 주는 기관 : 유휴·저활용장비를 보유한 모든 기관
- 장비 받는 기관 : 교육기관, 연구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,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

□ 신청제한

- 접수마감 전일까지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

□ 참고사항

- 장비 주는 기관은 국유재산법,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정하는 기준에서 상호 관리전환, 무상양여 등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필요 절차를 완료하여야 함
- 이전 후 3년간 장비를 받은 기관은 장비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
 - 장비활용실적보고서 검토 후 현장실사 실시 가능

3. 신청방법

□ 신청요령

- 장비 주는 기관 : 제출서류 작성 후 국가연구시설·장비 공동활용서비스 홈페이지(nfec-move.ntis.go.kr)에 장비 등록(NTIS 등록장비) 또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(NFEC)에 유선(042-865-3927) 신청(NTIS 미등록인 장비)
- 장비 받는 기관 : 제출서류 작성 후 국가연구시설장비공동활용서비스 홈페이지(nfec-move.ntis.go.kr)에 장비이전 신청

※ 신청양식 다운방법 :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sip.go.kr> > 알림마당 > 사업공고) 또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홈페이지(<http://www.nfec.go.kr> > 알림마당 > 사업공고)에서 양식 다운

□ 신청서 제출

- 제출서류
 - 장비 주는 기관 : 장비이전동의서(직인포함) 1부
 - 장비 받는 기관 : 장비이전요청서, 장비활용계획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각 1부

- 문의처
 - 미래창조과학부 성과정보관리과 (전화 : 02-2110-2725 / 이메일 : rembrandt@msip.go.kr)
 -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(NFEC) (전화 : 042-865-3929 / 이메일 : equipment@nfec.go.kr)

□ 신청기간

- 2013. 7월 ~ 2014. 3월 (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)

□ 신청 시 참고사항

-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을 우선 적용
- 이전비용 일부를 이전받는 기관이 부담할 경우, 이전장비 선정 시 우선 고려

4. 관련법령 및 규정

-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(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고도화)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(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고도화 추진)
-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법의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등의 규정 이행
- 「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」('13.3, 미래창조과학부) “7.연구시설·장비의 처분”